



이번 세무뉴스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

Covid-19에 관한 내용

1. 제 41/2020/NĐ-CP 호 시행령에 따른 법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 연장에 대한 지침
2. 제 41/2020/NĐ-CP 호 시행령에 따른 세금 및 토지 임대료 납부 연장 가능한 분야에 대한 지침
3. 2020년 국가 세무조사 계획 하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4. 코로나 상황 종료 이전 외국인 전문가의 베트남 입국 가능 조건

기타 규정

5. 노동허가서가 발급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한 비용
6. 법인소득세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공제 조건을 충족하는 매입 VAT
7. 베트남으로 반입되는 국제 포워딩 및 베트남내 창고 제공 용역을 제공하는 본사에 대한 외국인계약자세
8. 다목적의 관세 관련 평가에 대한 1회성 컨설팅 제안
9. 수출 상품 생산 설비 변경 내역 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수입관세 면제 적용 불가

01

조세 관리

02

법인 소득세

03

개인소득세 및 노동 관리

04

부가가치세

05

외국인계약자세

06

무역 및 관세

조세관리

신규 규정

제 41/2020/NĐ-CP 호 시행령에 따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 연장에 관한 지침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 2019 과세연도 확정신고시 납부 기한이 연장되는 법인세는 분기에 기 납부한 금액을 제외하며, 총 납부 해야하는 법인세 금액의 20%를 한도로 한다.
- 기업의 법인세 과세연도가 달력(양력)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은 기업의 과세연도에 따라 결정된다.
- 연장된 법인세 납부 마감일 전에 2019년도 법인세 수정 신고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납부해야할 법인세 금액이 증가하는 경우, 납부가 연장되는 법인세 금액은 (a) 규정에 따라야 하며 법인세 확정신고는 수정 신고 내용에 따라야 한다.
- 유 관 기 관 이 2019 년 도 에 대 한 세무감사 또는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연장된 납부 마감일 전에 발행한 경우, 납부 기한 연장이 적용되는 법인세 금액은 (a) 규정에 따라야 하며 총 법인세 납부금액은 세무 감사 및 조사 결과에 따른다. 납부 기한은 2019 년 과 세 연 도 법 인 세 확정신고 서류 제출 기한일로부터 5개월간 연장된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납부 기한 연장이 적용되는 VAT 금액은 본사에서 발생한 VAT 금액과 본사가 위치한 성 외부 지역 또는 두 성 간에 이루어지는 공사에서 발생하는 VAT 금액을 포함한다.

(재무부의 2020년 5월 20일 제 5977/BTC-TCT 호 OL)

제 41/2020/NĐ-CP 호 시행령에 따라 세금 및 토지 임대료 납부 연장 가능한 경제 분야에 대한 지침

2018년 6월 7일자 정부 제 27/7/QĐ-TTGH호 결정안과 함께 발행된 부록 (I) 및 (II)에 따라 세금 및 토지 임대료 납부 연장이 가능한 경제 분야를 규정한다

(세무총국의 2020년 5월 19일 제 2058/TCT-CS 호 OL)

2020년 감사 계획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세무대처를 진행하지 않는다.

Covid-19 상황 하에서 기업 및 기업들의 비즈니스 회복을 돕기 위해 국가 감사 기관(State Audit Office)은 2020년 감사 계획 하에 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에게 세금부담액과 세금 납부액을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감사과정에서 심각한 세무 부정 및 세금 포탈 행위에 대한 신호를 발견한 경우, 감사팀 책임자가 국가감사기관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Tax reconciliation 업무를 수행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국가 감사의 2020년 4월 24일 제 454/KTNN-TH 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유통또는판매아니라참고목적으로만사용



법인소득세



신규 규정

노동허가서가 발급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 관련 비용

세무총국의 2018년 1월 30일 제 357/TCT-CS 호 OL에 근거하여 하노이 세무국은 노동 허가서 발급 이전에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의 처리에 관한 OL을 발표하였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규정된 11개 서비스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의 내부 파견근무를 제외하고 이런 비용은 법인소득세 계산시 공제되는 비용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관련 매입 VAT는 공제되지 않는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0년 4월 23일 제 26515/CT-TTHT 호 OL)

정기예금 금리에 대한 법인소득세 인센티브

법인소득세 지역별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기업들은 재무부의 2015년 6월 22일 제 96/2015/TT-BTC 호 시행규칙 제 10조, 1항에서 기재된 소득을 제외하고는 인센티브 지역에서 발생한 모든 생산 및 영업활동 소득(일정기간 동안 로컬 은행에 예치한 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 포함)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현재까지 인센티브가 적용된 지역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없다. (예: 인센티브 지역에 위치한 은행 지점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인지 혹은 인센티브 지역의 생산 및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하노이 세무국의 2020년 5월 11일 제 33313/CT-TTHT 호 OL)

개인에게 지급한 중개 수수료

기업이 판매 활동을 위해 개인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 중개 자격증을 가지고 세금 및 사업자 등록 한 개인의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개인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의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또는 회사)는 2백만 동을 이상 지급할 때마다 개인소득세를 10%로 공제한다.

상기 비용이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간주된다.

(호치민 세무국의 2020년 4월 6일 제 3452/CT-TTHT 호 OL)

고객이나 직원에 대한 선물

기업이 영업 목적으로 고객이나 직원에게 선물하는 경우, 고객이 VAT Invoice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소득세 상 비용 공제 및 매출 VAT 신고 및 매입 VAT 공제를 위해 선물 종류 및 지급 금액에 관한 영수증과 고객 리스트를 일단위로 작성해야 한다.

(호치민 세무국의 2020년 4월 7일 제 3522/CT-TTHT 호 OL)

운송서비스시 적격한 VAT 전자영수증

기업이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에게 전자영수증(e-invoice)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전자영수증에 운송서비스라고 표시되고 운송일정에 대한 상세 내역이 첨부된 경우 (고객과 운송 서비스 공급자 간 비교 목적), 해당 영수증은 현행 규정에 따라 적격한 영수증으로 간주되어 구매자의 비용으로 인정되고 매입 VAT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호치민 세무국의 2020년 4월 6일 제 3451/CT-TTHT 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개인 소득세 및 노동 관리



신규 규정

베트남 정부의 Covid-19 종료 선언 이전 외국인 전문가의 베트남 입국 가능 조건

정부는 격리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투자자, 기술 전문가, 숙련 노동자, 기업 관리자(이하 외국인 전문가)의 베트남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외국인 전문가는 입국 후 14일간 일정장소에 격리조치되거나 호텔에서 격리된 상태로 2번의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또 지역공동체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격리 해제 후 14일 간 추가적인 의료 조사를 받아야 한다.

기업들은 성 인민위원회에 외국인 전문가 명단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명단은 출입국 사무소 및公安부에 제출되어 승인을 받는다.

(Covid - 19 예방 국가 위원회의
2020년 5월23일 제 2847/CV-BCĐ 호
OL)

장기 근속자 및 회사 내부 행사 추첨 당첨자에 대한 개인 소득세 원천징수

기업이 내부 행사 추첨 당첨자 또는 장기 근속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이러한 혜택은 개인소득으로 간주되어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호치민 세무국의 2020년 4월10일 제 3620/CT-TTHT 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부가가치세



신규규정

공제 조건을 충족하는 매입 VAT은 법인세 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수출품과 관련하여 공제 가능한 매입 부가가치세가 있는 기업이 해당 금액을 부가가치세 공제 금액으로 신고하지 않고 법인세를 줄일 목적으로 비용으로 처리한 사실을 세무당국이 적발한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 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이로 인한 법인소득세를 추가 징수하고 법인소득세 허위신고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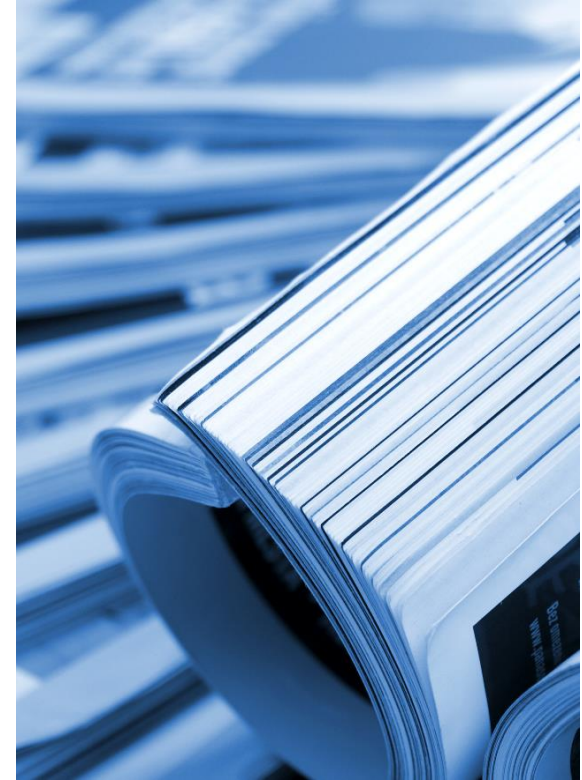
법인소득세의 과징금 및 허위신고에 대한 벌금을 납부 후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가 허용된다.

(세무총국의 2020년 5월 04일 제 1746/TCT-CS 호 OL)

2020년 11월 01일 이후 수출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2020년 11월 01일 이후 또는 세무당국이 제 119/2019/NĐ-CP 호 시행령 및 제 68/2020/TT-BTC 호 시행규칙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의 적용을 통지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의 내용은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재화 및 용역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 제화 가공업 포함)를 하면 전자 VAT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 세금계산서를 사용해야 한다.

(세무총국의 2020년 5월 19일 제 2061/TCT-CS 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외국인계약자세



지침 문서

해외에서 베트남내로 제공되는 국제 운송 및 창고 서비스는 외국인 계약자세 ("FCWT") 부과대상이 아님.

제 103/2014/TT-BTC 호 시행 규칙 제12조, 13조, 2조에 따라 해외에서 베트남내로 제공되는 국제 운송 및 창고 서비스에는 외국인 계약자세 ("FCWT")가 부과되지 않다.

베트남에서외국으로 향하는 국제 운송 및 창고 서비스는 제 103/2014/TT-BTC 호 제 13 조 1 항 b 점에 따라 외국인 계약자세 ("FCWT")가 부과된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0 년 5 월 18 일 제 37026/CT-TTHT호 OL)

베트남내에서 이루어지는 기계 유지 보수 및 수리 용역은 외국인 계약자세 ("FCWT") 부과 대상임.

베트남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인 계약자가 계약에 따라 베트남에서 기계 유지 보수 및 수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재무부의 2014년 8월 6일 제 103/2014/TT-BTC호 시행 규칙에 따라 외국인 계약자세 (법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다.

2013 년 11 월 06 일 제 156/2013/TT-BTC호 시행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계약자가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른 법인소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면 외국인 계약자는 FCWT신고 기한 이전 15일 내에 협정에 따른 세금 면제 통지 서류를 반드시 조세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0년 05월 12일 제 34309/CT-TTHT호 OL)

베트남내 국제 항공권 판매 사무소 ("TSO") 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외국인 계약자세 ("FCWT")가 부과

베트남내에 항공권 판매 사무소(TSO) 설립 허가를 받은 외국 항공사로서 해당 항공권판매 사무소에서 발생한 소득은 외국인 계약자세 부과대상이다. 2003 년 11 월 06 일 제 156/2013/TT-BTC호 시행 규칙에 따라 항공권 판매 사무소는 매 분기 법인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가진다. 다만, 연도말 확정신고는 면제된다.

외국 항공사가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법인세 면제 대상인 경우, 항공권 판매사무소는 외국인 계약자세 신고 기한 이전 15일 내에 제 156/2013/TT-BTC호 시행 규칙 제20조 3항에 따라 법인세 면제 통지 서류를 조세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0 년 4 월 23 일 제 2636/CT-TTHT호 OL)

본사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에 대한 외국인 계약자세

해외에 위치한 본사가 본사와 베트남내 자회사와의 내부 컨퍼런스 또는 전화 통화 목적으로 인터넷 회선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 후 매월 시스템 설치비용과 월 사용비용을 베트남 자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 통신법에 따라 회선대여 서비스가 이뤄지고 이 서비스가 외국에서 제공되는 경우 본사에 지급하는 금액은 외국인 계약자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 통신법에 따라 회선 대여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지 않거나 해당 서비스가 베트남내에서 제공되는 경우 본사에 지급하는 금액에는 법인세 명목으로 5%의 세율이 외국인 계약자세가 부과된다.

베트남 자회사가 본사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관리 소프트웨어, 글로벌 경제 및 생산 분석 소프트웨어 등)를 사용하는 경우, 여기에서 발생하는 본사의 소득은 103/2014/TT-BTC호 시행 규칙 규정에 따라 외국인 계약자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서는 법인세 명목으로 소프트웨어 부문에 대해서는 10%, 기타 서비스에 대해서는 5%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이퐁 세무국의 2020 년 4 월 22 일 제 951/CT-TTHT호 OL)

무역 및 관세



신규 규정

신규, 수정, 추가, 폐지 관세 절차 공표

26개의 신규 또는 수정된 행정 절차에 대한 지침이 발표되었다. 수출재화의 원산지 확인 및 검사와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상계절차등을 포함한 14개의 신규 사항과 수출입 재화의 원산지 사전 확인 절차 및 수입 재화의 원산지 확인 및 검사 절차 등을 포함하는 14개의 수정 사항 그리고 관세 행정 절차에 대한 개인과 기업에 자문 절차 등의 8가지 폐지 사항을 포함한다.

(재무부의 2020년 04월 24일 제 671/QĐ-BTC 호 결정, 2020년 04월 24일부터 유효)

ACTS 시스템을 통한 재화 통관 절차

아세안 통관 시스템 (ACTS)을 통한 재화 통관 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담은 결의가 발표되었다. 이 시스템은 ASEAN 국가간에 합의된 기술 서류를 바탕으로 관세총국이 개발, 관리 및 운영하는 전자 통관 시스템이다. 기업은 ACTS 시스템을 통한 통관 절차 또는 현행 규정에 따른 통관 절차 중 하나를 선택하여 통관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정부의 2020년 4월 9일 제 46/2020/NĐ-CP호 결의, 2020년 6월 1일부터 유효)

재수출 목적 일시 수입 재화, 환적 재화, 보세창고 보관 재화관련 수출입 국경 관문에 대한 신규 규정

2021년 01월 01일 00:00부터 재수출을 위한 일시 수입 재화 또는 환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베트남 내로 반입되었다가 육로로 재수출되는 경우, 이러한 수입 및 재수출 행위는 2014년 11월 21일 제 112/2014/NĐ-CP호 결의에 따라 개방된 국제 국경 관문소 (쌍방 국경 관문소)만을 통해 수행되어야 한다.

(산업통상부의 2020년 05월 14일에 발표한 제 09/2020/TT-BCT호 시행규칙, 2020년 06월 30일부터 유효)

규정 인증 적합을 요하는 정보통신 기술 ("IT") 제품 항목 대체

규정 인증 적합을 필요로 하는 IT 2그룹 제품 목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 기술규정의 인증선언 및 인증서를 필요로 하는 IT 제품 목록;
- 기술규정 인증 선언이 필요한 IT 제품 목록.

위 조건에 해당하는 제품은 제 65/2017/TT-BTC호 시행규칙에 따라 HS 코드가 분류되며 현행 수입관세율 및 관련기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정보통신부가 2020년 05월 14일에 발표한 제 11/2020/TT-BTTTT호 시행규칙은 2019년 07월 09일 제 05/2019/TT-BTTTT호 시행규칙을 대체하여 2020년 07월 01일부터 유효할 예정이다)

무역 및 관세



신규 규정

일회 관세 평가 결과를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시범제도

시범제도는 복수의 관세국에 속한 하나 이상의 관세지국의 범위에 있는 경우 이전 수출입 관세 평가 결과를 이후 수출입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본 시범제도에 따라 관세총국 국장이 발행한 심사 결과 복수 사용 통지서("참고 통지서")는 국내 모든 지방 관세국에서 사용가능하다. 지방 관세국 국장이 발행한 심사 통지서는 해당 도시 또는 성의 관세국 내에서만 적용된다.

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 부터 6개월 (180일)을 초과 할 수 없다.

관세신고시 통지서 허용 기준:

- i. 통지서가 유효기간 내에 있음;
- ii. 신고서에 기재된 물품명, HS코드, 원산지, 단위, 수출입 협력업체명, 계산방식이 통지서 상 내용과 일치해야 함;
- iii. 관세신고서에 기재된 관세 대상금액은 통지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낮을 수 없음.

이 외에도 시범제도는 다목적 사용가능한 통지서 발행 및 취소에 관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관세총국의 2020년 4월 29일 제 1304/QĐ-TCHQ 호 결정서, 2020년 5월 10일 부터 유효한다.)

지침 문서

수출 가공품의 라벨에 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상품 라벨과 원산지 명은 가공 계약서 상 필수 조건이다. 따라서 수출 상품의 라벨은 가공계약서 상에 합의 되어야 한다.

수출 업체들은 제 05/2018/TT-BTC 호 시행 규칙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책임을 가지거나, 산업통상부 C/O 발급 기관을 통해 자세한 지침을 받거나, 또는 제 38/2015/TT-BTC 호 시행규칙, 부록 II, 제 2.69 조에 따라 다른 수출 신고서에서 원산지를 신고해야 한다.

(호치민 관세국의 2020년05월13일 제 1381/HQHCM-GSQL 호 OL)

해외 거래처 지정 현장 수입품은 ATIGA 관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자유무역지구에서 수입되지 않은 해외 거래처가 지정한 현장 수입품의 경우 ATIGA 관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수입업자는 추가 수입관세 및 통관 일부터 추가 수입관세 납부 일까지의 지연납부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관세총국의 2020년 05월05일 제 2917/TCHQ-TXNK 호 OL)

수출품 생산 시설 변경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수입세가 면제되지 않음.

생산 시설 변경 후 해당기업이 관세국에 근무일 기준으로 3일 이내에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수입 원자재에 대한 수입세를 면제 받을 수 없다. 따라서 해당 기업은 수입세 및 연체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수입시 수입세 면제 대상이 아니지만 이후 생산에 투입되어 완제품이 수출되는 원자재에 관한 수입세 면제 및 환급에 대해서는 아직 규정이 없다. .

(관세총국의 2020년 4월 22일 제 2567/TCHQ-TXNK 호 OL)

수출품 생산을 위한 아웃소싱을 세관 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수출제품 생산용 원자재에 대한 수입세가 환급되지 않음.

수출용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업체가 제조에 대한 전부 혹은 일부 단계를 외부에 아웃소싱 하여 반제품을 받아 완제품으로 만들어 수출하고 세관에 외부 아웃소싱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아웃소싱 하는 원자재에 대해서는 수입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관세총국의 2020년 5월 15일 제 3150/TCHQ-TXNK 호 OL)

무역 및 관세



신규 규정

수출 가공 기업 ("EPE")에 위탁한 국내 기업은 완제품을 수입할 때 수입세와 VAT를 납부해야 한다.

기업이 수출용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제 134/2016/NĐ-CP 시행령, 제 10조, 2항 조건을 충족하면 수입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제 107/2016/QH13 호 수출입 조세 법령, 제 16조, 6 항에 따라 완제품의 수출세가 면제된다.

단, 국내기업이 가공용 자재를 수입한 후 수출가공기업에 위탁한 경우에는 수출가공기업에 수출된 원자재에만 수출세가 면제된다. 수출가공기업이 생산한 완제품을 국내기업이 다시 구매하는 경우, 이는 재 수입으로 보아 수입세 및 부가세가 과세된다.

현재 제 107/2016/QH13 호 수출입 조세 법령 및 제 134/2016/NĐ-CP 호 시행령은 수출 가공 계약이 있는 국내기업이 수출가공기업에 위탁 후 재수입한 제품에 대한 수입세를 납부하고 수출 목적으로 계속 가공하는 경우에 대한 수입세 환급규정이 없다.

(관세총국의 2020년 5월 11일 제 3018/TCHQ-TXNK 호 OL)

전자 C/O 양식 AI는 아직 허용되지 않음

현재 호치민 세관은 ASEAN - 인도 무역협정 하에 수출입 되는 제품에 대한 전자 C/O AI 양식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 C/O AI 양식은 제 15/2010/TT-BCT 호 시행규칙, 부록 IV, 제 5조, 1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호치민 관세국의 2020년 05월 08일 제 1341/HQHCM-GSQL 호 OL 및 2020년 05월 11일 제 1360/HQHCM-GSQL 호 OL)

상품 HS 코드 분류 결과는 3년간 유효

제 38/2015/TT-BTC 호 시행규칙에 따르면 세관 신고자는 기존에 통관한 화물의 분석 및 분류결과를 동일한 제품명, 구성, 물리.화학적 성질, 성능 및 동일한 생산기업으로 부터 수입한 경우 기존 분석 및 분류 결과일로 부터 3년간 (분석 및 분류 결과에 관한 규정이 수정, 변경, 대체된 경우 제외) 후속 상품에 대해 동일한 품명과 HS 코드를 신고 할 수 있다.

다만, 분석 및 분류 결과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세관이 리스크 관리 목적등을 위해 특정 통관 화물을 선정하여 분석 및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관세총국 2020년 04월 29일 제 2787/TCHQ-TXNK 호 OL)

수출품에 대한 외국 코드 또는 바코드를 무단 사용시 최대 2천만동의 벌금이 부과됨.

기업이 외국 코드 또는 바코드를 소유자 승인 혹은 외국 관련 기관의 라이선스 없이 제조, 가공.포장된 수출품에 사용하는 경우, 제 74/2018/NĐ-CP 호 시행령, 제 19b 조, 2항에 따라 코드 또는 바코드를 사용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해당 기업은 제 119/2017/NĐ-CP 호, 제 32조, 3항 a점으로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천만동에서 2천만동 사이의 벌금 부과)

(관세총국 2020년 04월 16일 제 2417/TCHQ-ĐTCBL 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Contact us



Thomas McClelland
National Tax Lead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Bui Tuan Minh
Tax Partn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Suresh G Kumar
Tax Partner
+84 28 7101 4400
ksuresh@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105 0023
ngavu@deloitte.com



Son Won Sik
KSG Director
+84 93 445 6850
wonsikson@deloitte.com



Kim Sun June
KSG Associate Director
+84 90 119 7014
sunjunkim@deloitte.com

Hanoi Office

15th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Ho Chi Minh City Office

18th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Deloitte.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About Deloitte Asia Pacific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Deloitte Vietnam Company Limited and its subsidiaries and affiliates.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 2020 Deloitte Vietnam Company Limited